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위원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의견서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020. 4.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위원

대표 위원 김 용 술 (구의원)

검사 위원 손 수 길 (세무사)

검사 위원 김 현 호 (세무사)

금천구청장 귀하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2020년 4월 1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3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금천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금천구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금천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 용 술

검사위원 손 수 길

검사위원 김 현 호





목 차

I. 결산검사 경과	3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4
1. 세입·세출 결산	4
2. 기금의 결산	8
3. 재무제표의 결산	9
4. 성과보고서	9
5. 결산서 첨부서류	
가. 금고의 결산	10
나. 채권	10
다. 채무	10
라. 세입세출외현금	11
바. 공유재산	11
사. 물품	11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2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12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2
나. 세입결산 분야	13
다. 세출결산 분야	18
2. 기금의 결산 분야	29
3. 재무제표의 결산 분야	30
4. 성과보고서 분야	32
5.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	33

I .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0. 3. 16. ~ 4. 14. (3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김용술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구의원
검사위원	손수길	■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 등 검사 - 본청(복지정책과 등 17개 부서) - 구의회(의회사무국)	세무사
검사위원	김현호	■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검토 ■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 등 검사 - 본청(복지지원과 등 15개 부서) - 보건소(보건의료과 등 3개부서)	세무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 자	검 사 내 용	일 자	검 사 내 용
3. 16 ~ 18	자료검토	3. 28 ~ 29	자료검토
3. 19.	구의회 민원감시담당관 복지정책과	3. 30.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3. 20.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3. 31.	도로과 차수과 행정지원과
3. 21. ~ 22	자료검토	4. 1.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
3. 23.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획예산과	4. 2.	민원여권과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3. 24.	홍보디지털과 지역경제과 재무과(구금고)	4. 3.	보건의료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3. 25.	세무1과 세무2과 주택과	4. 4.	결산검사 자료정리(결산검사종료)
3. 26.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4. 5 ~ 14	검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27.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안전도시과		

※ 코로나19 관련 대면검사를 최소화하고 서면 및 유선질의, 현지조사 등 유동적으로 실시하였음.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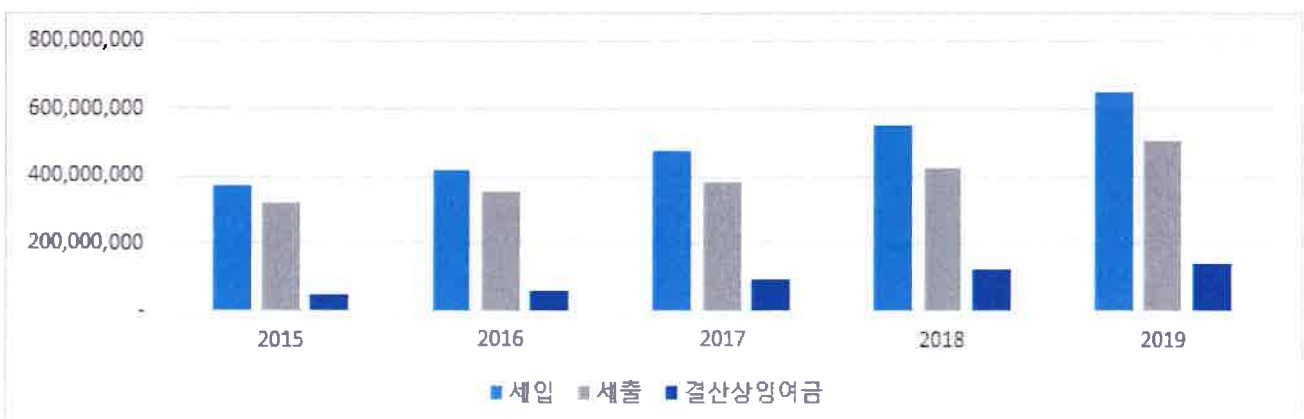
1. 세입·세출 결산

금천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세 입	372,977,371	417,112,037	480,128,370	552,918,442	650,687,180
	세 출	323,195,182	353,749,596	386,198,400	426,595,613	509,023,474
	결산상잉여금	49,782,189	63,362,441	93,929,970	126,322,828	141,663,706
일반회계	세 입	352,668,530	397,167,911	458,606,644	532,060,525	624,730,329
	세 출	312,519,491	343,195,520	372,931,847	414,870,459	495,030,501
	결산상잉여금	40,149,039	53,972,391	85,674,797	117,190,067	129,699,828
특별회계	세 입	14,417,261	14,740,458	15,920,448	14,874,868	18,435,147
	세 출	6,815,293	5,468,946	7,386,153	5,492,750	7,795,672
	결산상잉여금	7,601,968	9,271,511	8,534,295	9,382,118	10,639,475
기 금	세 입 (수 입)	5,891,580	5,203,668	5,601,278	5,983,048	7,521,704
	세 출 (지 출)	3,860,399	5,085,130	5,880,400	6,232,405	6,197,301
	결산상잉여금	2,031,181	118,538	△279,121	△249,356	1,324,402



나. 세입·세출결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608,956,891,780	643,165,476,064	502,826,173,013	140,339,303,051
일반회계	590,784,761,780	624,730,328,780	495,030,500,653	129,699,828,127
특별회계	18,172,130,000	18,435,147,284	7,795,672,360	10,639,474,924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보조금집행잔액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0	39,127,143,040	13,704,099,780	0	8,026,609,780	79,481,450,451
일반회계	0	37,454,225,040	12,723,976,240	0	7,998,449,760	71,523,177,087
특별회계	0	1,672,918,000	980,123,540	0	28,160,020	7,958,273,364

※ 자금 없는 이월 없음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3,165,476,064원으로 예산현액 608,956,891,780원보다 34,208,584,284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의 78%인 502,826,173,01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0,339,303,051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39,127,143,040원, 사고이월비 13,704,099,78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8,026,609,78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9,481,450,451원입니다.

세입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세입결산액) (C)	증 감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C-A)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C-B)		
합 계	608,956,891,780	670,324,372,224	643,165,476,064	34,208,584,284	△27,158,896,160	1,312,548,110	25,846,348,050
일반회계	590,784,761,780	642,868,987,630	624,730,328,780	33,945,567,000	△18,138,608,850	739,978,080	17,398,600,820
특별회계	18,172,130,000	27,455,434,594	18,435,147,284	263,017,284	△9,020,287,310	572,570,080	8,447,717,230

세출결산(예산기준)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예산상 보조금반납금 (E)	예산상 집행잔액 (F)	비 고
합 계	608,956,891,780	502,826,173,013	52,831,242,820	6,909,514,938	46,389,961,009	
일반회계	590,784,761,780	495,030,500,653	50,178,201,280	6,875,354,918	38,700,704,929	
특별회계	18,172,130,000	7,795,672,360	2,653,041,540	34,160,020	7,689,256,080	

세출결산(실 수납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수납액 (세입결산)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월액 (D)	실제 보조금반납금 (E)	실제 집행잔액 (F)	순세계 잉여금 (G=B-C-D-E)
합 계	643,165,476,064	502,826,173,013	52,831,242,820	8,026,609,780	45,272,866,167	79,481,450,451
일반회계	624,730,328,780	495,030,500,653	50,178,201,280	7,998,449,760	37,577,610,087	71,523,177,087
특별회계	18,435,147,284	7,795,672,360	2,653,041,540	28,160,020	7,695,256,080	7,958,273,364

※ 순세계잉여금 = 초과세입금(수납액-예산현액 34,208,584천원) + 실제 집행잔액(구비 45,272,866,167)

다.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79,481,450,451	33,915,547,000	45,565,903,451	
일반회계	71,523,177,087	27,394,000,000	44,129,177,087	
특별회계	7,958,273,364	6,521,547,000	1,436,726,364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2019년 순세계잉여금은 79,481,450,451원으로서 2020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27,394,000,000원과 특별회계 6,521,547,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44,129,177,087원과 특별회계 1,436,726,364원을 합한 45,565,903,451원이 2020년도 추경재원으로 조정 가능한 금액입니다.

라. 예비비 지출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615,418,000으로서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외 9건으로 1,680,66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64,170,830원을 지출하고 693,000,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3,496,1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25,615,418,000	1,680,667,000	964,170,830	693,000,000	23,496,170
일반회계	23,048,065,000	1,680,667,000	964,170,830	693,000,000	23,496,170
특별회계	2,567,353,000	0	0	0	0

마. 이월사업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건립』 외 130건인 52,831,242,82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외 100건 39,127,143,04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외 47건인 13,704,099,780원입니다.

2. 기금의 결산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말 12,371,868,29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521,703,89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197,301,400원이고

차입잔액은 13,696,270,785원으로서 그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12,371,868,290	1,324,402,495	7,521,703,895	6,197,301,400	13,696,270,785
자활기금	1,128,359,200	△165,012,840	45,667,160	210,680,000	963,346,360
노인복지기금	346,364,180	2,790,280	7,590,280	4,800,000	349,154,460
양성평등기금	394,744,960	1,992,980	7,342,980	5,350,000	396,737,940
청년미래기금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재난관리기금	3,231,094,660	444,675,340	735,136,530	290,461,190	3,675,77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017,042,810	35,831,420	146,677,990	110,846,570	1,052,874,230
도로굴착복구기금	1,606,521,260	26,468,810	1,278,770,940	1,252,302,130	1,632,990,070
중소기업육성기금	2,961,857,400	500,607,080	4,586,097,080	4,085,490,000	3,462,464,48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23,979,920	52,514,335	56,451,335	3,937,000	476,494,255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94,364,200	△39,126,380	22,351,550	61,477,930	255,237,820
식품진흥기금	967,539,700	△36,338,530	135,618,050	171,956,580	931,201,170

3. 재무제표의 결산

2019회계연도 금천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순자산이 전년대비 71,138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3%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총비용-총수익)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0,463백만원(17.21%)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	1,446,617	25,432	1,421,185	510,000	449,211	△60,789
2018	1,376,979	26,933	1,350,047	446,974	396,649	△50,326
증감	69,638	△1,500	71,138	63,026	52,562	△10,463

4. 성과보고서 결산

2019년도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5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0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420,36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기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54	111	11	90	10	502,826	420,363	82,463
민원감사담당관	1	1	3	0	2	1	179	117	61
복지교육국	1	13	17	2	13	2	260,295	215,702	44,593
기획경제국	1	9	22	1	20	1	34,554	17,216	17,338
도시환경국	1	11	17	1	15	1	12,416	9,185	3,231
안전건설국	1	7	18	3	13	2	19,237	16,481	2,756
행정문화국	1	7	18	1	16	1	153,832	143,123	10,709
미래발전추진단	1	2	5	0	5	0	5,808	4,408	1,400
보건소	1	3	8	1	5	2	13,543	11,240	2,303
의회사무국	1	1	3	2	1	0	2,963	2,891	72

5. 결산서 첨부서류

가. 금고의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잔액(금고보관액)(A-B)
합 계	643,165,476,064	502,826,173,013	140,339,303,051
일반회계	624,730,328,780	495,030,500,653	129,699,828,127
특별회계	18,435,147,284	7,795,672,360	10,639,474,924
의료급여기금	588,579,180	542,013,270	46,565,91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60,923,024	9,800,000	851,123,024
주차장	16,985,645,080	7,243,859,090	9,741,785,99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인 우리은행 금천구지점에서 통보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합니다.

나.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5,459,455,199원에서

당해연도 7,522,997,871원이 발생하고 7,108,239,052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874,214,018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5,459,455,199	7,522,997,871	7,108,239,052	15,874,214,018
일반회계	6,166,077,708	277,000,000	385,862,000	6,057,215,708
특별회계	286,753,000	9,800,000	35,700,000	260,853,000
기 금	9,006,624,491	7,236,197,871	6,686,677,052	9,556,145,310

다. 채무

「지방재정법」 제8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에 의한 201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라.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C-D)	증가액(C)	지출액(D)	
합 계	7,198,193,925	△3,086,652,839	23,734,866,991	26,821,519,830	4,111,541,086
보 증 금	91,720,397	△70,568,611	150,547,115	221,115,726	21,151,786
보 관 금	6,671,894,888	△3,081,960,038	17,080,357,436	20,162,317,474	3,589,934,850
잡 증 금	434,578,640	65,875,810	6,503,962,440	6,438,086,630	500,454,450

마. 공유재산

201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19,722.09m² 722,640,416,461원
 건물 136,863.67m² 226,834,549,851원
 기타 353건 20,498,844,289원
 총 969,973,810,601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351,573,658,594	27,916,831,642	409,516,679,635	969,973,810,601
행정 재 산	계	1,331,313,929,554	27,916,831,642	409,516,679,635	949,714,081,561
	공공용재산	1,103,369,291,690	27,140,439,733	409,516,679,635	720,993,051,788
	공용재산	227,944,637,864	776,391,909	-	228,721,029,773
일반재산		20,259,729,040	-	-	20,259,729,040

바. 물품

(단위 :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물품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증감	
			구매/관리전환	매각/폐기		
수 량	1,228	165	46	0	119	1,347
금 액	8,623,978,395	1,361,519,628	703,343,080	0	658,176,548	9,282,154,943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5년간 세입·세출예산 평균증가율 및 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 평균 증가율
세입예산		367,086	411,908	474,527	546,935	643,165	13.82
세출예산		319,335	348,664	380,318	420,363	502,826	11.36
결 산 상 잉 여 금	계	47,751	63,244	94,209	126,572	140,339	27.76
	이월액	13,799	27,334	58,635	50,026	52,831	57.73
	보조금실제반납금	3,082	4,705	4,042	6,993	8,027	15.97
	순세계잉여금	30,870	31,205	31,534	69,553	79,481	28.43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예산은 13.82%, 세출예산은 11.36%로 세입이 세출보다 2.47% 많으며, 매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및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 2018회계연도는 초과세입금이 23,701,416천원인데 반해 2019회계연도는 초과세입금이 34,208,584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507,16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상 실제수납액 643,165,476천원에서 세출결산상 지출집행액(이월액포함) 555,657,416천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8,026,610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4.28%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의 평균증가율이 57.73%로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시 이월액 및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세입결산 분야

1) 세수입의 적정성 검토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불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B-E-F)	비율 (%)	
			수납총액 (C)	한급액 (D)	실제수납액 (E=C-D)			E/A	E/B
합 계	608,956,892	670,324,372	644,166,420	1,000,944	643,165,476	1,312,548	25,846,348	105.6	95.9
일반회계	590,784,762	642,868,938	625,709,292	978,963	624,730,329	739,978	17,398,630	105.7	97.2
특별회계	18,172,130	27,455,434	18,457,127	21,980	18,435,147	572,570	8,447,717	101.4	67.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4.5%에서 당해 연도 105.6%로 1.1%상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5.9%로서 전년도(95.1%)보다 0.8% 상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4.7%에서 당해 연도 105.7%로 1.0% 상향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99.8%에서 당해 연도 101.4%로 1.6% 상향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60.9%에서 67.1%로 6.2%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징수결정 대비 각각 비율이 상승된 것으로 세입징수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음.

2)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재원별 세입수납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평균 증가율(%)
자 체	지 방 세	63,707	66,442	71,581	75,641	83,831	7.13
	세외수입	26,261	30,139	31,452	34,690	42,205	12.77
이 전	지방교부세	5,414	7,357	9,091	12,973	14,342	28.18
	조정교부금	76,437	93,018	106,602	122,939	129,990	14.34
	보 조 금	145,908	160,062	185,909	200,143	237,171	13.00
합 계		317,727	357,018	404,635	446,386	507,539	12.43

재정지표(세입)

(단위 :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정자립도	27.39	26.79	27.20	25.60	25.31
재정자주도	50.36	50.67	52.91	51.73	49.43

금천구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 등 외부재원의 증가가 더 커서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것은 금천구의 세입구조 특성상 세입기반의 변동성이 크게 없고, 사회복지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급속한 증대로 자체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것은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원의 비율보다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율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향후 자체적인 세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체재원(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실제수납액(C)	비율(B/A,%)	비율(C/A,%)
합 계	119,043,587	158,805,169	131,907,125	137.6	110.8
일반회계	소 계	113,426,437	144,175,267	127.1	111.1
	지방세수입	78,580,818	84,421,599	107.4	106.7
	세외수입	34,845,619	59,753,668	171.5	121.1
특별회계	소 계	5,617,150	14,629,902	260.5	104.5
	주차장 외 세외수입	18,758	317,104	1690.5	336.0
	주차장세외수입	5,598,392	14,312,798	255.7	103.7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는 111.1%이며, 특별회계는 104.5%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전년도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대비 수납율이 121.1%(일반회계)로 이는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차장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 255,7%로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세입금 미수납액 제고방안 검토

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비율(%)
합 계		144,292,323	27,098,830	18.8	158,805,169	25,585,495	16.1
일반회계	소 계	128,976,320	17,802,632	13.8	144,175,267	17,398,631	12.1
	지방세수입	76,525,806	561,438	0.7	84,421,599	511,420	0.6
	현년도	75,657,523	244,893	0.3	83,835,627	231,274	0.3
	과년도	868,283	316,545	36.5	585,972	280,146	47.8
	세외수입	52,450,514	17,241,194	32.9	59,753,668	16,887,211	28.3
	현년도	35,006,844	2,077,274	5.9	42,174,099	1,602,505	3.8
	과년도	17,443,670	15,163,920	86.9	17,579,569	15,284,706	86.9
	특별회계 세외수입	15,316,003	9,296,198	60.7	14,629,902	8,186,864	56.0
	현년도	5,943,628	1,052,630	17.7	5,441,699	585,068	10.8
	과년도	9,372,375	8,243,568	88.0	9,188,203	7,601,796	82.7

세수확보에 있어서 2019회계연도 전체 징수결정액(670,324,372천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158,805,169천원)은 23.7%로 2018회계연도(전체 징수결정액 575,128,316천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44,292,323천원) 25.1%보다 1.4%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58,805,169천원 중 미수납액은 25,585,495천원(16.1%)으로 이는 2018회계연도에 비하여 2.7% 감소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상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매년 과년도 미수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의 과년도 미수납비율 보다 5.3% 감소한 것으로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년도 미수납액 비중이 높게 차지하므로 지속적인 체납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 재 산	행방 불 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2019	합 계	17,846	4,955	2,569	13,629	3,892	46	0	0	19	0	736
	일반회계	17,399	2,592	1,076	10,043	3,146	46	0	0	19	0	475
	특별회계	8,448	2,363	1,493	3,586	745	0	0	0	0	0	261
2018	합 계	27,078	3,354	1,593	11,014	3,370	52	0	6,567	25	0	1,101
	일반회계	17,782	2,525	1,010	10,244	3,370	52	0	0	25	0	556
	특별회계	9,296	829	583	770	0	0	0	6,567	0	0	545

미수납액에 대한 현실적 개선책 및 적극적인 회수노력과 아울러 회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손처분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결시킴으로써 구민생활을 더 안정되게 하고, 미수납액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감소와 향후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나)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미수납대비 시효소멸

(단위 : 천원)

회 계 연 도	미수납액(①)	시효소멸(②)	비 율 (②/①)
2019	8,505,359	468,602	5.50%
2018	8,750,832	251,350	2.87%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 사유의 회계연도별 비율분석을 해 보면 2018회계년도 2.87% 대비 2019회계년도는 5.50%로 시효소멸 사유가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효소멸 전에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 천원)

회계년도	구 분	30만원 미 만	30만원~ 50만원미 만	50만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운수사업 범위반)	합 계
2019	건 수	167,117	-	-	1	169,137
	금 액	8,503,063	-	-	2,296	8,505,359
2018	건 수	167,525	-	-	-	167,525
	금 액	8,750,832	-	-	-	8,750,832

2019회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8,505,359천원으로 전년대비 245,473천원 감소하였으며, 이를 금액규모별로 보면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약간 감소한 반면 100만원 이상이 1건 증가한 바, 앞으로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납세자의 자산 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체납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납부독려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 2019 과태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회계년도	징수결의		수 납		미수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57,170	2,260,983	45,629	1,670,236	11,541	590,747	73.87
2018	55,809	2,198,359	41,424	1,551,841	14,385	646,518	70.59
2017	55,571	2,371,819	39,494	1,461,616	16,077	910,203	61.62

특히, 특별회계 체납액 중 대부분 차지하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보면 2019회계 연도의 경우 73.87%로 전년 대비 3.28%, 전전년 대비 12.25%가 각각 증가된 바, 향후에도 계속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세출결산 분야

1) 세출예산 집행의 적합성 검토

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 반납금 (C)	집행잔액 (D)	비율	
			계(B)	명시이월	사고이월			B/A	D/A
합 계	608,956,892	502,826,173	52,881,243	39,127,143	13,704,100	6,909,515	46,389,961	87	76
일반회계	590,784,762	495,031	50,178,201	37,454,225	12,723,976	6,875,355	38,700,705	85	66
특별회계	18,172,130	7,796	2,653,042	1,672,918	980,124	34,160	7,689,256	146	423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은 7.6%로 전년(8.9%)대비 1.3%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7%로 전년도(9.6%)대비 0.9% 감소하였습니다.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모사업 총예산 2,015백만원, 독산1동 보건소설치 850백만원 등은 2017년부터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 이월하였으나 결국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흥5동 주민센터 건립 6,592백만원, 독산동 다목적문화센터건립 이월액 2,777백만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1,442백만원 등은 주변 민원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민원발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중에는 시에서 필요 외의 예산을 내려 보내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고 매칭사업으로 구예산도 함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부 결정 공문에 의하여 간주 처리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보조금이 11월 이후 교부된 금하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 외4건 10,745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예산편성 하였으나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2.2%로 전년(62.8%)대비 19.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 사업(주차장)의 추진이 매우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현장 및 주민 밀착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A)	지 출 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합 계	25,615,418,000	1,680,667,000	964,170,830	693,000,000	23,496,170
일반회계	23,048,065,000	1,680,667,000	964,170,830	693,000,000	23,496,170
특별회계	2,567,353,000	0	0	0	0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비비지출 예산 중 청사관리(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693,000천원은 편성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의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되는 바, 이는 예측 할 수 없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이월을 전제로 예비비사용 예산편성을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예산전용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서 각 세항 또는 목간으로 제한해서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20건 13억 3,984만원과 기타특별회계 6건, 5,692만원이 전용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에 의하면 대부분 세항 또는 목간에 서로 전용이 이루어 졌으나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인건비적 성격)을 시설비로, 자산 물품취득비를 보조금으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 운영비를 해외여행경비로, 사회복지보조금을 시설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를 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나 시설비등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하거나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나 건설비로 전용은 가능하나, 추경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편성후 집행하고 예산 전용은 가급적 제한하고 있는 바, 전용내용 중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일반사무비나 정책사업비를 시설이나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용한 것은 각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는 것이기는 하나 같은 사업용도로 빈번하게 전용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예산편성시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추경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편성후 집행하도록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제한운용되게 업무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일반회계 세출구조 및 집행내역 검토

가)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8 결산액	비율(%)	2019 결산액	비율(%)
합 계	414,870,458	100	495,030,500	100
인 건 비	79,766,325	19.2	83,918,011	17.0
물 건 비	29,181,913	7.0	33,505,395	6.8
경상이전	256,524,470	61.8	293,974,485	59.4
자본지출	44,357,699	10.7	73,362,784	14.8
용자및출자	0	0.0	0	0.0
내부거래	677,245	0.2	2,180,984	0.4
예비비 및 기타	4,362,806	1.1	8,088,841	1.6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액 중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이전금인 경상이전 지출액이 전체의 59.4%로 전년대비 2.4% 감소, 경상비인 인건비와 물건비 지출액 23.7%로 전년대비 2.5% 감소,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4.1% 증가, 예비비 및 기타 지출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인 인건비와 물건비를 제외하고 전체 예산대비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이 전체 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 시민 및 단체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지출액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 등이 해당 단체에 있으므로 예산집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부터 향후 집행비 정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목적, 금액 등 적정 여부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매년 일정액, 해당 단체도 매년 변동이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 단체도 유사한 단체가 있고, 지원 내역 또한 행사비, 식비, 활동비 위주가 많습니다.

단체의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을 자제하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하여 지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 기본경비 집행내역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비율
	당초	추경	현액			
2019	8,060,085	36,811	8,095,526	6,539,741	1,555,785	19.21
2018	7,913,038	53,727	7,989,460	6,465,181	1,524,279	19.07
2017	7,369,978	129,766	7,507,654	6,853,157	654,497	8.71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집행률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비 고
국내 여비	예산현액	3,921,040	4,080,960	4,030,090	기본경비의 85% 내외
	지출액	3,646,510	3,101,960	2,862,760	
	집행률	93.00%	76.01%	71.03%	
사무 관리비 (급량비)	예산현액	2,422,759	2,694,439	2,749,378	
	지출액	2,184,530	2,229,899	2,429,587	
	집행률	90.17%	82.76%	88.37%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1,556백만원으로 19.22%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국내여비 집행률은 71.03%로, 기본경비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여비 및 사무관리비(급량비)는 부서 정원 기준으로 산출하여 매년 예산편성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출장 및 시간외근무 감소 등으로 집행률은 감소추세입니다.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율은 8.7%이나 기본경비 19.22%, 국내여비 28.97%로 매년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여 편성 또는 감추경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검토

가)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지원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 재산, 금융별 등 지원요건별로 검토하여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보장	연도	지원가구수	예산액	집행액	진행율(%)	전년대비 집행금액 증감율(%)	전년대비 가구수 증감율(%)
국가	2019	2,069	1,953,364	1,651,002	84.5	46.1	△5.6
	2018	2,192	2,183,156	1,130,000	51.8	△16.3	△2.4
	2017	2,246	1,350,000	1,349,999	99.9	47.6	51.7
서울형	2019	1,074	402,820	402,820	100.0	23.2	34.1
	2018	801	327,000	327,000	100.0	△ 7.9	44.6
	2017	554	356,000	354,986	99.6	195.8	71.5

- 2019.12.31.현재 총가구수 : 111,287세대
- 연장건수 : 2017년 449가구, 2018년 587가구, 2019년 534가구
-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0 건

총가구수 대비 긴급복지 총지원가구수 비율을 보면 2017년 2.5%, 2018년 2.7%, 2019년 2.8%로 증가되어 왔으며, 긴급복지별로 가구수의 경우는 전년대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한편, 예산집행금액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미집행비율이 48.2%로 높은 사유는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미집행비율이 높아졌고, 2019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2018년도 미집행예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미집행예산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도별 긴급복지 지원을 재연장한 건수를 보면 2017년 449가구, 2018년 587가구, 2019년 534가구로서 전체지원가구수의 24.1%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2017~18년도 환수결정 대상가구 중 2가구에겐 1,572,450원 중 358,450원을 환수하여 2019년 8월 세외수입(잡수입)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보통 선지원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급복지법 제13조 및 제15조 등에서 지원기관의 장은 긴급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사후조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3조에서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긴급복지지원은 특성상 지원은 신속히 하되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위법 부당한 긴급복지지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여유있는 자들이 편법이나 변칙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 노인무료급식 사업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계층의 소외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바,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기력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기 힘들어 하는 노인계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끼의 식사가지만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금천구의 노인무료급식 사업일환으로 지원한 현황을 동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동 별	60세이상 노인수①	급 식 제 공 현 황				비 율 (②/①)
		소 계②	경로식당	식사배달	밀반찬배달	
총 계	54,282	1,069	685	200	184	2.0
가산동	3,547	60	49	-	11	1.7
독산1동	7,820	271	193	47	31	3.5
독산2동	4,777	78	46	14	18	1.6
독산3동	6,191	89	78	6	5	1.4
독산4동	3,963	68	47	13	8	1.7
시흥1동	8,197	120	71	18	31	1.5
시흥2동	5,406	141	77	37	27	2.6
시흥3동	3,188	25	11	7	7	1.0
시흥4동	5,531	66	33	14	19	1.2
시흥5동	5,662	151	79	44	28	2.7

60세 이상 총노인수 대비 총급식제공 인원수의 비율은 2.0% 정도가 되고 동별로 급식제공 비율을 보면 독산1동, 시흥2동, 시흥5동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가산동 등 나머지 7개동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급식제공을 유형별로 보면 경로식당이 64.1%, 식사배달이 18.7%, 밀반찬배달이 17.2%로서 노인무료 급식은 만 60세이상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식당이 주를 이루고 있고, 경로식당 수행기관 7개의 지원실태를 보면 금천노인종합복지관과 제일성결교회에는 운영비를 보조하고, 청담종합사회복지관과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영양사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과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에는 영양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반면 살구여성회에는 지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됩니다.

민간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시비(市費)의 경우 경로식당 대상이 60명 이상일 경우에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살구여성회가 그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2019년 경로식당 지원대상을 보면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이 60명, 살구여성회가 40명, 제일성결교회 75명으로서 시비지급 기준에 적합한 지원 대상은 제일성결교회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임이 확인되나,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이나 제일성결교회는 자체 시설로 운영되지만 살구여성회는 임차건물에서 임차료 등을 자비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점, 앞으로 노인계층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끼니를 거르는 노인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로식당 소요인원을 관주도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설사, 시비(市費)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구비(區費) 차원에서라도 운영비를 지원 (또는 차등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60세 이상 동별 노인수 대비 급식제공 대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독산3동, 시흥3동 및 시흥4동의 경우는 대상자나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등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동별 경로당 현황과 운영실태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여가 복지를 위해 마련된 시설로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이나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오락을 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업도 하는, 노인복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읍, 면, 동, 리, 자연마을, 아파트단지)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금천구 관내 "2019년 동별 경로당 수 및 평균이용 인원수 등에 관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개)

동 별	65세이상 인구수①	경로당현황			평균치현황		
		갯수②	회원수③	주이용자수④	①/②	③/②	④/②
합 계	36,089	72	2,618	1,519	501	37	21
가산동	2,244	7	217	144	321	31	20
독산1동	5,164	19	713	415	272	38	22
독산2동	3,134	2	118	60	1,567	59	30
독산3동	4,043	7	268	115	578	38	16
독산4동	2,619	4	165	102	655	41	26
시흥1동	5,542	9	256	167	616	28	19
시흥2동	3,580	9	258	202	398	29	22
시흥3동	2,140	4	198	105	535	50	26
시흥4동	3,652	5	207	83	730	41	17
시흥5동	3,971	6	189	116	662	32	19

위 표에 의하면 경로당 1개당 평균인구수는 501명이고, 평균회원수는 37명, 평균이용자수는 21명 정도가 되며, 그중에서 독산2동, 독산4동, 시흥3동, 시흥4동의 경우는 경로당 1개당 회원수가 평균회원수 보다 월등히 많은 반면, 가산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5동은 평균회원수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독산2동의 경우는 평균인구수, 회원수, 주이용자수가 다른 경로당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을 증설해주고, 또한 평균회원수나 평균이용자수 보다 많은 동에 대하여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취미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인건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비고
	최종	당초			
구본청 인건비	71,181,240	71,669,219	64,828,287	6,352,953	
인건비	65,060,427	65,548,406	59,167,886	5,892,541	
직급보조비	2,566,193	2,566,193	2,248,151	318,042	
포상금	3,554,620	3,554,620	3,412,250	142,370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1,068,900	1,067,797	881,403	187,497	
구의회 인건비	1,715,855	1,710,045	1,593,434	122,421	

연금부담금 편성 현황(2019년)

(단위 : %, 천원)

구 분	부 담 율	인 건 비	편 성 액 (부담율*인건비)	비 고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14.8987	71,669,219	10,677,783	구본청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재해보상부담금	0.192	74,447,061	142,939	구본청, 구의회, 주차장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인건비 예산편성 전년도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 편성하고 있어 최종 인건비 편성액과는 차이가 있어 매년 많은 금액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대하여는 예산편성금액으로 공무원 연금을 부담하는 바 집행잔액이 발생하며 그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을 부담하고 있음(2019년 추가부담액 946백만원)으로 인건비 예산편성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원기준뿐만 아니라 전년도 집행잔액 등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금의 결산 분야

(단위 : 천원)

기금명	조성액			사용액 (B)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율 (B/A)
	전년도말	당해연도	계(A)			
합 계	12,371,868	7,521,704	19,893,572	6,197,301	13,696,271	31.2
자활기금	1,128,359	45,667	1,174,026	210,680	963,346	17.9
노인복지기금	346,364	7,590	353,954	4,800	349,155	1.4
양성평등기금	394,745	7,343	402,088	5,350	396,738	1.3
청년미래기금	0	500,000	500,000	0	500,000	0.0
재난관리기금	3,231,095	735,137	3,966,232	290,461	3,675,770	7.3
옥외광고발전기금	1,017,043	146,678	1,163,721	110,847	1,052,874	9.5
도로굴착복구기금	1,606,521	1,278,771	2,885,292	1,252,302	1,632,990	43.4
중소기업육성기금	2,961,857	4,586,097	7,547,954	4,085,490	3,462,465	54.1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423,980	56,451	480,431	3,937	476,494	0.8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294,364	22,352	316,716	61,478	255,238	19.4
식품진흥기금	967,540	135,618	1,103,158	171,957	931,201	15.6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전년도말 조성액(12,371,868천원) 대비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6,197,301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적립할 수 있으며, 각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중 기금조성 총액과 기금사용액, 그리고 기금잔액을 살펴보면 기금사용실적이 10%미만이 5건이 되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은 1%도 안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파악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3. 재무제표의 결산 분야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18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446,617	1,376,979	69,638	5.1
I. 유 동 자 산	184,062	169,169	14,893	8.8
II. 투 자 자 산	13,480	13,526	△46	△0.3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73,432	172,305	1,127	0.7
IV. 주 민 편 의 시 설	356,157	305,875	50,282	16.4
V. 사 회 기 반 시 설	712,664	707,805	4,859	0.7
VI. 기타비유동자산	6,822	8,300	△1,478	△17.8
부 채	25,432	26,933	△1,501	△5.6
I. 유 동 부 채	9,797	8,462	1,335	15.8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15,635	18,471	△2,836	△15.4
순 자 산	1,421,185	1,350,047	71,138	5.3
I. 고 정 순 자 산	1,246,346	1,188,257	58,089	4.9
II. 특 정 순 자 산	23,480	21,482	1,998	9.3
III. 일 반 순 자 산	151,358	140,307	11,051	7.9

당해연도 말 현재 금천구청의 총자산과 부채는 1,446,617백만원과 25,43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69,638백만원 증가하였고 부채는 1,500백만원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음. 부채는 유동부채는 전년도에 비해 1,335백만원 증가하였고, 비유동부채는 2,83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총수익은 510,00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02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총비용은 449,21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2,56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13,431백만원, 정부간 이전 수익이 46,957백만원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은 449,21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1,13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였으나, 수익의 증가폭이 비용의 증가폭을 상회함으로 인해 당해연도말 재정운영결과는 △60,78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46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18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나)	83,950	89,686	△5,736	△6.4
	사업총원가(가)	328,581	282,596	45,985	16.3
	사업수익(나)	244,632	192,910	51,722	26.8
II.	관리운영비	107,808	102,246	5,562	5.4
III.	비배분비용	12,821	11,806	1,015	8.6
IV.	비배분수익	7,695	6,123	1,572	25.7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196,884	197,616	△732	△0.4
VI.	일반수익	257,673	247,942	9,731	3.9
VII.	재정운영결과 (V-VI)	△60,789	△50,326	△10,463	20.8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9회계연도 금천구의 사업순원가는 83,950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107,808백만원), 비배분비용(12,821백만원) 및 비배분수익(7,695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96,884백만원임.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57,673백만원을 차감한 2019회계연도 금천구의 재정운영결과는 △60,789백만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금천구의 재정운영결과는 △608억원으로 전년도의 △503억원보다 △105억원(20.8%)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총원가는 460억원(16.3%) 증가하고 비배분비용이 10억원(8.6%) 증가한 반면, 사업수익은 517억원(26.8%), 일반수익은 97억원(3.9%)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자의 의견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재무제표 검토인도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로 검토인의 의견을 신뢰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검토인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실과소의 담당직원들이 자산, 비용 등 재무제표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 이해, 관리과목의 특성파악 및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관심유도를 통해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4. 성과보고서 분야

금천구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천구는 본 회계연도의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9개)-정책사업목표(54개)-단위사업(11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달성수(B)	미달성 수	달성률 (A/B)
계	9	54	111	101	10	91
감사담당관	1	1	3	2	1	67
복지문화국	1	13	17	15	2	88
기획경제국	1	9	22	21	1	95
도시환경국	1	11	17	16	1	94
안전건설국	1	7	18	16	2	89
행정지원국	1	7	18	17	1	94
미래발전추진단	1	2	5	5	0	100
보건소	1	3	8	6	2	75
의회사무국	1	1	3	3	0	100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하여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설정시 성과측정치를 실적이 아닌 진행률로 하거나,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당해연도 지표로 사용, 또는 성과목표 지표를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측정치를 지표로 설정하는 등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바, 직원들의 성과분석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 분야

가.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증	감		
합 계	1,351,573,659	27,916,832	409,516,680	969,973,811	
토 지	706,447,599	16,192,817	0	722,640,416	
건 물	217,176,927	9,657,622	0	226,834,549	
공 작 물	393,695,394	0	378,207,844	15,487,550	
기 타	34,253,739	2,066,393	31,308,836	5,011,296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거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 말 금천구청의 공유재산은 총 9,700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 총 279억원 증가되었고 4,095억원이 감소되고 이중 공작물 감소액 3,782억원은 실체가 없는 장부상 금액을 감소처리 한 것입니다.

재무제표 검토자인의 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동내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실과소에서는 이러한 변동내역을 변동발생 즉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총괄담당자는 변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절히 판단하고 승인함으로써 정확한 변동내역이 e-호조시스템에서 새올공유재산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나. 물품보유 현황

(단위 : 개, 원 / 2019.12.31.)

전 체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품목수	수량	금액	품목수	수량	금액	품목수	수량	금액
1,040	63,635	52,660,539,517	32	1,347	9,282,154,943	1,008	62,288	43,378,384,574

※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정수(59종), 비정수(정수 제외)구분

행정안전부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결산서상 물품현재액보고서에는 정수 물품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나, 자산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비정수물품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